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1년



▲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야기이끄미

얌(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외전화 활동가)

▲ 일시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야기이끄미

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 일시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차 례

온라인 광장을 열며	3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4
공소시효란?	5
성폭력 공소시효 계산 방법	7
과거의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10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12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 친족성폭력	16
현재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18
해외의 법과 인식은?	20
우리가 해야 할 일	23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5
아름의 발언	28
푸른나비의 발언 <가족과 성폭력>	31
하윤의 발언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34
달의 발언	35
부록 ①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카드뉴스	39
부록 ② <알기 쉬운 공소시효 계산하기> 카드뉴스	47
부록 ③ 더 알고 싶다면	57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일시 : 2021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앞 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 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을 시작하겠습니다. 친족성폭력을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1년 만에 말했다는 생존자도 계시지만 30년, 40년 만에 말했다는 생존자도 계시거든요.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55.2%에 달한다고 해요.¹⁾ 이런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에게 공소시효란 어떤 의미인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1부와 2부를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에서는 세 분의 이야기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야기이끄미를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앞 활동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야기꾼 세 분도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미경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활동가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반갑고요.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가 참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해서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희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위민 안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저는 법적인 부분들을 설명해드리려고 참여했어요.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공감하고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안녕하세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행복 활동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연대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소중한 시간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년 미만 24.1%, 5년 미만 4.6%, 10년 미만 13.8% 10년 이상 55.2%, 미상 2.3%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앞 혹시 오늘 행사의 홍보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서 행사 홍보를 시작했어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매년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친족성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버이날에는 예술인들과 함께 제작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영상 「시간을 거스르다 : 법의 시간 너머」를 유튜브에 게시했고²⁾, 재작년 어버이날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와 함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친족 성폭력 엄벌하라〉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³⁾

일반적으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모성애와 부성애, 아버지 은혜 등을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친부나 친형제에게 친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생존자가 대단히 많고, 양부, 의형제, 사촌, 삼촌 등 다양한 친족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합니다.⁴⁾ 가족에 관해 이야기하려면, 친족성폭력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⁵⁾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매년 가정의 달에 친족성폭력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상담 중 15.8%가 친족성폭력 상담이었어요. 약 6분의 1이니깐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요? 전체 성폭력 상담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거든요.⁶⁾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중에서는 친족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⁶⁾

그런데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중 친족성폭력 비율은 2.4%밖에 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만큼 친족성폭력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받는 생존자는 많지만 실제로 가해자를 신고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2019년 상담통계에서 친족성폭력 생존자 중 과반수는 피해 이후 상담을 받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고 했죠. 2021년 상담통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2)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https://youtu.be/O39qhpuZHPU>

3)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5522>

4)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3순위는 친형제(27.6%), 사촌(23.7%), 친부(19.7%)이다. 친부(19.7%)와 의부(9.2%)를 합하면 총 28.9%가 부녀/부자 관계에서 발생하며, 친형제(27.6%)와 의형제(2.6%)를 합하면 총 30.2%가 '형제' 관계에서 발생한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친부, 삼촌, 의부인 비율이 더 높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친형제, 사촌, 의형제인 비율이 더 높았다.

5) 전체 성폭력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3순위는 직장 내 성폭력(25.7%), 친족성폭력(15.8%),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10.2%)이다.

6) 피해연령별로 친족성폭력 상담 비율을 살펴보면,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는 각 69.7%와 64.3%로 가장 높고, 청소년(19세-14세)도 27.8%로 가장 높다.

요, 친족성폭력 상담 중 57.8%는 상담을 받았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였다고 해요.

공소시효가 끝나면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게 정확히 뭔지, 꼭 필요한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안지희 변호사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싶어요.

공소시효란?

안지희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도록 면죄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공소시효를 둡니다.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범죄까지 다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을 하도록 하면 법적 안정성이 깨진다는 취지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공소시효를 법정형별, 단계별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7) 살인죄는 2015년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습니다.8) 제가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특이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1995년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생겼어요.9) 2007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집단살해죄 등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생겼고요.10)

-
- 7)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8)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 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성범죄 관련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¹¹⁾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¹²⁾에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 그러면 공소시효가 ‘무조건 있어야 한다,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안지희 네, 아닙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영미법계 국가 중 몇몇 국가에서는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
-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않 네, 그렇군요. 아까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13세 이상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소개한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상담 중 38.1%는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이었던거예요.¹³⁾ 만약 13세 이상을 기준으로 다시 통계를 낸다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지겠죠. 친족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적어도 4명은 그 피해에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계산 방법

안지희 네, 설명해드릴게요. 현행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13세 이상이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어요. 일단은 2007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공소시효를 전반적으로 상향했어요. 친족성폭력은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어서¹⁴⁾ 대부분 공소시효가 7년이었던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제·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 등이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도록 특례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어서 2012년에 같은 법을 개정해서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유형력이 수반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이 생겼고, 그 뒤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을 개정했어요. 이를테면 2020년에는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에 대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는 의제강간·추행죄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법령 시행 일자에 따라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일일이 따져봐야 하거든요. 공소시효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제가 최대한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¹⁵⁾ 법률 규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쉽게 정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13) 고령(65세 이상) 1.3%, 성인(20세-64세) 10.5%, 청소년(19세-14세) 26.3%, 어린이(13세-8세) 47.4%, 유아(7세 이하) 11.8%, 미상 2.6%.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15) 부록 ② 〈알기 쉬운 공소시효 계산하기〉 카드뉴스 참조.

공소시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일을 확인한 후, 출생연도에 13을 더해서 만 13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19를 더해서 만 19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 13세와 만 19세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규정이 많아서 이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피해 당시의 나이를 확인해야 해요. 피해 일시별로 피해 기간이 있을 거예요. 피해가 한 번만 있을 수도 있지만, 6개월, 1년, 3년,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에 피해가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피해의 기간을 특정해야 하고, 피해 기간 중 나이가 바뀌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별로도 나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피해 일시별로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한 다음에는 피해 당시 시행 중이던 「형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를 처벌할 때는 아무리 나중에 법이 개정됐어도 범죄 행위일에 시행 중이던 법을 기준으로 처벌하거든요. 우선 피해 당시 시행 중이던 법에서 해당 성범죄의 법정형이 몇 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별로 다르거든요.

법정형을 확인했다면 피해 당시 시행 중이던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공소시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행법상 강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간처럼 법정형의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 법정형은 유기징역의 상한인 30년(가중하면 50년)이고, 강제추행처럼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최대 법정형은 그 상한입니다. 따라서 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최근에 피해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만약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피해가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7년일 거예요.

그다음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범죄 행위일이 기산점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 4월 15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10년 4월 15일에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그 이후에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날이 기산점인 거죠. 만약 2010년 4월 15일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범죄 행위일입니다. 이처럼 법령 시행 일자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결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현행법상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013년 6월 19일에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만약 법령 시행 일자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래대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¹⁶⁾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상의 사례를 구성해왔는데요, “피해자가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 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년 5월 26일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공소시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 번째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1992년 8월 10일생이라면 13을 더해서 만 13세가 되는 시점, 19를 더해서 만 19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2005년 8월 10일에 만 13세가 되고, 2011년 8월 10일부터 만 19세가 되네요.

그다음에 피해 당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피해가 있었던 2005년 3월부터 만 13세가 되기 하루 전인 2005년 8월 9일까지는 만 12세. 2005년 8월 10일부터 2006년 2월까지의 만 13세. 이런 식으로 피해 기간 중 나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확인해야 해요.

당시 적용되던 법 규정을 확인해보면, 만 12세일 때는 친족 강제추행죄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일 때는 친족 강제추행죄만 적용됩니다. 당시의 법정형을 각각 살펴보면, 친족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둘 다 장기 10년 이상이죠.

공소시효를 확인해보면, 당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2010년 4월 15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한다고 설명해 드렸죠. 이 사례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2010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는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피해가 2005년 3월에 있었고, 공소시효 7년을 더하면 2012년 3월에 공소시효가 끝나죠. 2010년 4월 15일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네요. 그러면 공소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성년, 만 19세가 되는 2011년 8월 1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피해자는 만 12세일 때도 피해가 있었잖아요?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강제추행이 있었으므로 2013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이 사례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은 2011년 8월 10일이고, 공소시효 7년을 더하면 공소시효는 2018년 8월 10일에 끝납니다. 2013년 6월 19일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만 12세일 때 피해는 공소시효를 적용하

16) 만약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인 대상 강간·준강간 사건이라면, 한 가지 더 살펴볼 조항이 있다.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011년 11월 17일에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인 대상 강간·준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또한 2012년 8월 2일에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인 대상 강간·준강간은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지 않습니다.

다시 2022년 5월 26일 현재 시점으로 결론을 내면, 2005년 3월부터 2005년 8월 9일까지 만 12세일 때 피해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서 고소할 수 있고, 2005년 8월 10일부터 2006년 2월까지 만 13세일 때 피해는 2018년 8월 10일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타깝게 공소시효가 도과한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루 차이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13세 미만 뿐 아니라 친족성폭력 전체에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해야 합니다. 친족성폭력은 다 미성년자일 때 당하는 거고 미성년자일 때는 공소시효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정지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앞님이 소개한 상담통계나 제가 가지고 온 예시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리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해도 부족합니다. 성인이 돼서 바로 부모를 떠나고 고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들이 고소할 수 없는 환경에 있다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러므로 친족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그만큼 법이 복잡하고 여러 번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가만히 있다가 법이 그냥 바뀌었을 리는 없고,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에서 공소시효를 바꾸기 위한 지난한 투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반성폭력 운동이 성폭력 공소시효를 없애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어떻게 법을 변화시켜왔는지 이미경 활동가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싶습니다.

과거의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이미경 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현장은 모든 성폭력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정부에 정책 제언을 하거나 비판을 할 때 그 기반이 되잖아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개소한 이래 상담일지를 분석하면서 대단히 많은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끝나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6년도에 상담일지 2년 8개월 치를 분석해 봤더니 전체 성폭력 상담 6,609건 중 8.9%인 592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상담이었어요. 그중 61.7%는 바로 친족성폭력이었죠. 이건 아주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상담을 받게 되는지 상담일지를

분석해 봤어요. 가장 많은 분이 말씀하신 이유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성폭력을 범죄 행위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었어요. 피해 당시에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내가 어떻게 했더라면’ 하는 자책감,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나 비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또 친족성폭력은 그 특성상 만약 내가 아버지나 오빠한테 입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다른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하는 마음 깊은 배려도 있었어요. 가해자가 “다른 가족한테 알리면 다 죽여버릴 거다, 집에 불을 내버릴 거다”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을 때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뉘어라, 그냥 너만 조용히 입 다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다 관찰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아버지가 가해자인 경우 어머니의 반응과 대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자신의 충격을 추스르기에 바빴다.” 또 우리 가족은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비록 내가 피해가 있었지만, 나만 참으면 다른 가족들은 다 온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상담일지 분석을 통해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어떻게 배가되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006년에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담일지 분석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도 전개했구요. 2008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전달했었어요. 당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 자료집을 배포했었던거예요. 그중에 몇 명이나 이 자료집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활동가들은 이 자료집을 일일이 나눠주는 활동을 했었어요.

또 하나 중요한 활동으로 2006년 12월에는 공소시효 상담일지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자 다섯 분이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을 청구했었어요.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보장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잘못된 법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다 각하됐어요. 어떤 청구인은 성폭력 사건이 불기소돼서 항고하고 그 항고가 기각돼서 재항고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경우 헌법소원은 다른 법적인 구체 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최후의 구제 수단으로 제기되어야 하는데 재항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또 다른 사례는 불기소 처분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심판 대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어요. 결과적으로 다 각하돼서 더는 진전이 안 됐죠.

그렇지만 아까 안지희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듯이 그동안 공소시효와 관련된 변화가 몇 번 있었잖아요. 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시키고 해당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하도록 한 법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작년에도 있었죠.¹⁷⁾

이처럼 공소시효에 관해 많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활동가와 법조인도 함께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압 네, 감사합니다. 2006년에 진행한 헌법소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깐 2017년에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생존자가 계셨더라고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함께 진행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가해자가 친부였고, 미성년자일 때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자가 2017년에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이미 2015년 이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 해결을 하지 못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여겨 헌법소원을 제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도 안타깝게 각하됐는데요, 각하 사유가 참 답답했어요. 결정문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거예요. 생존자들은 성년이 된 날부터 7년, 10년인 공소시효도 다 끝난 다음에 상담을 받는 상황인데, 공소시효가 끝난 지 1년 이내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단지요. 법은 왜 이렇게 기간 제한이 많은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2006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획 소송을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공소시효가 끝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은 생존자들을 모아서 다 같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죠.

각설하고, 이미경 활동가님께서 소개해주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 자료집을 저도 읽어보았는데요,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가 필요한 근거로 친족성폭력 상담 사례가 많이 인용됐더라고요. 공소시효가 끝난 성폭력 상담 중 61.3%가 친족성폭력 상담이었는데, 그만큼 친족성폭력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기 힘들고 신고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행복 활동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는 성년이 되고 나서 10년이니까 누군가가 보기에는 꽤 긴 기간일 수도 있는데, 친족성폭력 생존자는 그 기간이 다 지나도록 고소를 하지는커녕 상담을 받기도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

행복 친족성폭력은 특히 더 말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요. 성폭력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이

17) 헌법재판소 2021.6.24. 선고 2018헌바457

고 반복적이고 피해가 발견되기 어려운, 가정폭력의 모든 특징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권력이 생기면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드는 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ですよ. 가부장제 안에서 가장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하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나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마음대로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해자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에서 가족 내 폭력은 강자에서 약자에게로 흐르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친족성폭력은 그 특성상 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일 때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유아기와 아동기는 발달 특성상 주 양육자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잖아요. 피해자는 자라면서 주변에 대한 인지 도식을 넓혀가고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폭력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거나 대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내 성폭력이 있는 경우에 그 밖에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정서적인 학대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권, 생사여탈권이 가해자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환경인 거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면 무력감이나 무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동은 가족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가족의 애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친족성폭력은 가족의 애정과 가해 행동이 뒤섞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구별하거나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자가 어렸을 때보다 생각의 크기가 넓어진 후에 "이거 왜 이래?"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때, 가해자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사랑해서 그런 거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탓을 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이 나타나잖아요? 회피, 신체화부터 시작해서 기억 장애까지. 어떤 생존자분은 30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책을 읽는데 어떤 단어를 보는 순간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가해자가 헐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은 심리 발달 특성상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라고 자책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심리를 가해자는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가 이 사실을 경찰 아저씨한테 알리면 우리 가족은 모두 떨어져서 지내게 될 거야. 엄마가 알면 슬플 거야." 이런 식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헐박하고 조종해요. 그러면 이 소리가 피해자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잖아요. 이를 깨고 나오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행복 활동가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도 있어요. 친족성폭력 특성상 아버지나 오빠나 사촌 등 가족을 고소해야 하잖아요? 이때 ‘정상 가족’의 신화를 깨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되거든요. 사실은 가해자가 갠 것인데, 마치 내가 갠 것처럼 되는 거죠.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게다가 한국은 형사소송법에서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거든요.¹⁸⁾ 물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친족성폭력은 고소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지만요.¹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사회적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서 피해자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앞 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친족성폭력 생존자분들이 입소하고 퇴소하는 과정을 봐도 자립의 어려움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죠. 우리 사회는 사회 복지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주로 가족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잖아요.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 돈이 없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사회에서 친족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단순히 일상 회복이 어렵다는 수준을 넘어서 때로는 생존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도 당연히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고소하기 어려운 이유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최근에 읽은 책도 생각나더라고요. 유명한 반성폭력 활동가인 이브 엔슬러라는 작가가 2019년에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책을 냈어요. 작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친족성폭력 가해자이자 가정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사과받기 위해서, 이미 죽은 아버지를 화자로 삼아 가해자의 관점으로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작가가 이 책을 썼을 때 작가의 아버지는 죽은 지 30년이 지났다고 해요. 피해 이후 가해자가 죽기까지도 긴 세월이 있었고, 가해자가 죽고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상상으로 쓰기까지 다시 30년이 걸린 거죠. 작가가 『아버지의 사과 편지』라는 책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경험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을까. 친족성폭력은 정말 말하기 어렵고, 양가감정이라든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을 생존자에게 남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생존자가 법적 해결을 바라기도 합니다. 단순히 10년, 20년 지나서 “이제는 말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해자 처벌까지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상담 중 15.8%는 생존자가 말하기를 시작한 이유가 ‘법적 처벌을 위해서’로 드러났다고 해요.²⁰⁾

18)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생존자가 법적 처벌을 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피해 생존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원하죠. 누군가는 가해자에게 사과받는 걸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법적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가해자라는 걸 온 가족이 인정해주는 걸 원할 수 있고, 누군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손해 배상 겸 유산이나 많이 물려받길 원할 수도 있죠. 다양한 문제해결의 욕구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분들은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법적 해결이 친족성폭력 생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법적 해결 자체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긴 시간 동안 폭력을 당했을 때, 가해자에게도 사과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네가 느낀 것이 맞다. 너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받고 지지받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로도 드러나듯이 공소시효가 끝나서 고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실제로 많은데요, 제가 지원한 사건 중 하나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추석 명절에 사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면 피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뿐 아니라 온 친척이 다 난리가 날 거라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피해 이후 피해자는 힘들어서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가해자는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았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해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원하는 게 뭐냐? 돈을 원하나?”라고 비웃었어요. 가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고 물어봤더니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그다음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고소하려면 해 봐. 너는 법적으로 나를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더라.” 이런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피해자는 더한 절망과 분노 등을 느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 사건이었어요. 어떠한 법적 지원도 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에 공감하면서 어떻게 피해자가 이를 딛고 나아갈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정도밖에 상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이러한 상담 전화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더욱 주목해서 봐야 하겠죠.

행복 저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지원 사례가 있어요. 가해자가 친오빠였고, 가족 모두 신

20) 주변인들에게 지지받기 위해서 34.2%,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19.7%, 현재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19.7%, 법적 처벌을 위해서 15.8%, 가해자에게 사과받기 위해서 7.9%, 미상 2.6%.

고를 반대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너무나 무서워했지만, 마침 가해자가 군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서 가해자와 떨어지고 나니까 가족이 반대해도 신고할 용기가 생긴 거예요. 가족은 “신고하면 너랑 절연할 거다”라고 말했고, 결국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가해자를 신고했어요. 가해자가 군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치유 받는 느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20대 초반에 가족의 모든 지원이 다 끊겨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셨어요. 친족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얏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례를 들으니까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다 같이 채팅으로 구호를 외쳐볼까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다 같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당장 폐지하라~~~!!!

얏 감사합니다. 많은 분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지금도 친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1년 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할 때도 친족성폭력 사건이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이미경 활동가님, 그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 친족성폭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1년 전, 199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여성주의를 공부한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는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도 없다, 이제는 피해자 상담과 법적·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관련 교육과 연구, 정부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등을 하는 상담소를 만들어보자”라고 뜻을 모아 시작했죠. 물론 1927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인 근우회가 설립됐고,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83년 한국여성의전화,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여성단체가 생겼는데, 그 덕분에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특정 주제로 상담소를 열 수 있었어요.

사실 문을 열고는 ‘과연 몇 명이나 상담을 할까?’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상담들. 그중에는 친족성폭력 상담도 많았죠.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그동안 쌓인 체증을 다 털어내며 평평 우시는 생존자분들을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면, 1991년 1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기 전에 일

어났던 사건인데요, 9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30살에 21년 전 그 강간범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성폭력범죄는 친고죄²¹⁾였고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했는데, 이러한 제한 때문에 이 사건 피해자는 아무런 법적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이 시작됐죠.

그러다가 1992년 1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어떤 남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13년간 의붓딸을 강간한 가해자를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버님께서 “물론 제 아이가 (사람을 살해한 건) 너무 잘못했지만, 친족성폭력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어떻게 선처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래서 전국 56개 여성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고, 이들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22명의 무료 변호인단과 함께 이 사건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우리 법은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소할 수조차 없었어요.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하고 있어도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을 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마침내 93년 12월에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94년 1월부터 시행됐죠.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친족성폭력 사건은 반성폭력 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 네, 성폭력특별법이 생긴 뒤 성폭력은 직계존속이라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고²²⁾, 2013년 6월 19일에는 성폭력 친고죄 조항도 폐지되었죠.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만들어왔구나, 새삼 실감이 납니다.

참여자들이 채팅으로도 의견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더 문제입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친족성폭력 중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는 더더욱 말하기 어렵고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 활동가님께 31년 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현재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이 주체가 되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잖아요. 책을 내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플래시몹을 하거나 집회를 열기도 했죠. 작년부터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정기 시위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행복 활동가님께서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줄

21)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22) 각주 19 참조.

수 있을까요?

현재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행복 공폐단단 활동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공폐단단은 평범해 보이는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친족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부터’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1인 이상의 연대 액션 모임이고, 활동하는 모든 1인을 공폐단단 활동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9년 12월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액션 예고를 하고 목동,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플래시몹을 했던 것이 공폐단단 활동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주도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가 2021년 1월 25일부터 5일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을 계기로 매마토 정기 1인 시위가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진행해서 ‘매마토’예요. 마지막 토요일 12시에 광화문으로 오면 누구나 시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찍 와서 함께 피켓을 만들고 싶다면 11시 반까지 광화문 플래티넘에 있는 장애여성네트워크 사무실로 오시면 되고요. 같이 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2시부터 하는 시위에만 참여하고 싶다면 피켓을 직접 만들어서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고종즉위40년청경기념비 앞으로 오면 돼요. 항상 그 근처에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달은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엄마, 아빠, 오빠 등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피켓에 적어오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피켓을 만들어오면 됩니다.

얏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매마토 정기 시위를 계속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 이번 달은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기 어렵다면 다음 달은 캘린더에 미리 일정을 써두어도 좋겠어요.

사실 정기적으로 시위를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행복님은 매마토 정기 시위에 꾸준히 참여해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행복 저는 지금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서울강서양천여성외전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화상담 자원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전화 중에 친족성폭력 피해상담 전화가 있었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원 방안을 찾기가 어려웠고, 가해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갔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엮여있었거든요.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죠. 그때 저는 막 자원활동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상담자가 중심을 잡고 버텨줘야 해’라고 생각하고 있었

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떻게 하느냐고 절규하는 내담자분의 말씀을 듣고 결국 같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관통하는 기억이에요. 그 기억은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고, 활동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근활동가로서 일하다가 작년 5월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북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저자 중 한 명인 푸른나비님과 매마토 정기 시위를 알게 됐어요. '내가 아직 잘 모르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푸른나비님을 쫓아다녀 보자'라고 결심했죠. 시위에 참여하고 연대하면서 스스로 많이 변화했다고 느낍니다.

읽 참고로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는 친족성폭력 생존자분들이 텀블벅 펀딩을 통해 제작한 수기집입니다. 당시 텀블벅에서도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후 출판사 글항아리를 통해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라는 제목으로 정식 출판되었어요. 아직 못 읽어본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2020년 12월에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분들과 온라인 낭독회를 진행한 적 있어요. 저자분들이 직접 울림 있고 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낭독해주셨는데, 그 영상은 지금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²³⁾

다시 이야기 주제로 되돌아오면, 매마토 정기 시위를 광화문에서 한다는 건 시민들에게 이 의제를 알리는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은 친족성폭력 관련 시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행복 시위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결눈질로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간혹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가해자가 누구냐, 친족성폭력이 정말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나쁘다, 천인공노할 짓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같이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유인물을 받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서 서명할 수 있냐,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도 있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제에서 약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얼마 전 서울강서양천여성의회전화에서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 달을 맞아 지역 일대에서 도보 캠페인을 벌였어요. 옷을 맞춰 입고 돌아다니면서 팸플릿을 나눠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아직도 가정폭력이 있냐, 내 주위에 없어서 몰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친족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비슷한 반응이라고 느꼈어요.

23)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와의 낭독회 <https://youtu.be/1uGpSwcL2TY>

앞 친족성폭력이 정말 있다고 물어봤다고 하니깐 우리가 더 많이 거리로 나가서 친족성폭력 문제를 외치고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채팅으로 어떤 참여자께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위한 제도도 반드시 함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써주셨어요. 그렇죠.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생존자 일상회복을 위한 제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또 다른 참여자께서는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네요.

오늘 행사를 앞두고 신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사전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해외 사례에 관한 질문이 꽤 많았어요. 안지희 변호사님, 해외에서는 공소시효 관련 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해외의 법과 인식은?

안지희 해외 입법례도 국가별로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독일, 일본, 프랑스처럼 문서화된 법이 있는 성문법주의 국가는 법적 안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공소시효를 원칙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문서화된 법이 없는 불문법주의 국가에는 무조건 공소시효가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성 풍속에 관한 경범죄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어요. 미국은 주별로 법이 달라요. 공소시효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경범죄와 중범죄를 나눠서 적용하는 곳도 있고, 다양합니다. 성문법 국가라도 살인죄처럼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살인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정형을 살펴보면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인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²⁴⁾

친족성폭력은 어떠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법정형을 살펴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최소 5년 이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최소 7년 이상입니다.²⁵⁾ 살인죄, 존속살인죄와 법정형이 똑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 친족성폭력은 살인죄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친족성폭력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해외 입법례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법 개정에도 참고하기 위해서라

24)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 각주 15 참조.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달라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어려운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질문을 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 법 제도상으로도 친족성폭력은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 국제적인 흐름을 참고하자면, 작년 유엔이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²⁶⁾에서도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번역하여 조만간 발간할 예정이에요. 우리는 지금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폭력의 공소시효 폐지를 외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다른 사전 질문을 보면, 해외도 한국처럼 친족성폭력 문제가 심각한지, 친족성폭력에 관한 인식이 한국과 다른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어요. 혹시 해외에서는 친족성폭력 실태가 어떤지 아는 분이 계실까요?

이미경 어쩌면 전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안타깝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성폭력 사건 재판을 봐도 똑같더라고요. 가해자들은 어디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법을 배웠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는 요제프 프리첼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실의 소녀 Girl in the Basement>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죠.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해요. 가해자가 자신의 셋째 딸을 11살 때부터 강간했는데, 딸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까 봐 결국은 셋째 딸을 지하실에 가둬요. 셋째 딸은 그 지하실에서 자녀 7명을 출산하게 돼요. 그중 4명은 가해자가 어디에서 애를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입양해서 자기 부인과 키우고, 피해자와 나머지 세 아이는 지하실에 감금된 채로 긴 세월을 지내게 돼요. 총 24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 사건을 세상이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됐냐. 지하실에 감금된 자녀 중 한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제발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는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그 덕분에 가해자를 잡게 된, 실제 사건이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는 작년부터 미투엔세스트(#metooinceste)라는 해시태그로 친족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은 한 변호사가 쌍둥이 형제의 친족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면서 시작됐어요. 가해자는 의붓아버지인데, 저명한 정치학자였죠. 피해자의 쌍둥이 형제가 쓴 책 『대가족』에 따르면, 가해자가 의붓아들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했고, 저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해요.

26) UN, 2021, A/HRC/47/26, 「Rape as a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 a crime and a manifestation of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its prevention」

심지어는 소위 저명한 정치학자인 아버지와 어울리던 많은 정계 인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이를 계기로 프랑스 내 많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나도 그렇다’라며 SNS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미투엔제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족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 고요. 저는 해외 토픽으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는 수많은 친족성폭력 사건과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새삼 놀랐어요.

친족성폭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종을 따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고, 모두가 공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친족성폭력을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 행위로 인식해야 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 제 경험도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2019년에 아일랜드를 방문한 적 있는데, 목이 말라서 마트에 들어갔다가 신문 가판대가 보여서 우연히 신문 1면을 봤어요. 영어라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친족성폭력 관련 기사인 거예요. 활동가의 눈으로 읽었죠. 가해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신문 1면을 꼭 채웠더라고요. “나는 괴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개자식이 맞다.” 친족성폭력 가해자가 맞고, 개자식도 맞지만, 그래도 괴물은 아니라는 자기변명을 한 순간 섞은 말이었겠죠.

저는 그 말이 일면 맞는다고도 생각해요. 친족성폭력 가해자는 항상 ‘괴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 말을 가해자가 하면 아니겠지만. 스스로를 괴물로 여겨도 못마땅할 판에 뭘 잘했다고 끝까지 괴물은 아니라? 꽤 씁하잖아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해외라고 친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더 좋지도 않고 반대로 특별히 더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면, 사실 미투 운동 이후로 친족성폭력에 관한 언론 보도는 끊이지 않고 있어요. 제 기분 탓인가요? 저는 친족성폭력 관련 기사를 정말 자주 보거든요. 친부가, 의부가, 오빠가, 삼촌이, 사촌이……얼마 전에는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 관련 기사를 봤어요. 또 제가 알기로는 공페단단 활동가분들도 상당히 많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데, 국회는 왜 친족성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작년 1월에 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발의했지만²⁷⁾, 아직 계류 중이거든요. 발의된 법안을 확인해봤더니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이미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조항이 있잖아요. 그 조항을 친족성폭력에도 적용하도록 딱 한 마디만 추가하면 돼요.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인데,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지금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어

27) 2021년 1월 26일 양정숙·박찬대·이규민·민형배·한병도·서영교·김철민·안호영·김승원·윤준병 의원(10인) 발의, 의안번호 210763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

또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에 대해 우리처럼 문제 의식이 있는 법조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법조계에서 힘을 실어주면 좋을 텐데, 아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하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안지희 우리나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없애는 문제도 정말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작년 1월에야 삭제됐어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사실상 자녀 체벌권을 인정하는 조항이었거든요. 체벌도 가정폭력의 일환이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가해자는 항상 “징계권이 있으므로 훈육한 것뿐이다”라며 폭력을 정당화했죠. 그러다가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나서야 국회에서도 동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사건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급물살을 타고 법안이 통과되었어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충족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살인죄와 친족성폭력의 법정형이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도 법정형이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죄,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은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면서 친족성폭력은 배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통과될 수 있는 법인데도 국회가 통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020년 7월 27일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²⁸⁾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어요. 2021년 1월 27일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양정숙 의원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법을 통과시키려면 이 문제에 정말 관심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매달 정기 시

28) 2020년 6월 8일 서영교·이정문·안민석·전재수·박홍근·이용빈·김철민·천준호·안규백·박찬대·윤관석·김병기·홍영표·송재호·김승남·양향자·고영인·박정·맹성규 의원(19인) 발의, 의안번호 21002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열심히 알리고 있으니까, 잘 홍보하고 목소리를 모으다 보면, 조만간 차별금지법과 함께 통과할 수 있을 것이고,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 채팅으로 한 참여자께서 남겨주신 말입니다. “법조계에서 관심이 없는 이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 그대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사건이라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른 다른 법안들도 변경해야 하는 게 귀찮은 거죠.” 엉덩이 무거운 국회를 움직이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연락하고,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리는 작업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 선거할 때도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 등을 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반응을 보이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 그렇네요. 선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시다.

이제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를 마무리하고,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몸과 마음을 털면서 쉬어가겠습니다.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 2부는 참여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발언 또는 대독을 신청한 분들이 계신데요, 그전에 어떤 참여자께서 남겨주신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에 아동 대상 친족성폭력 건으로 성폭력상담소에 상담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해당사건 취재하던 기자로 연락을 드렸는데, 단체 측에서 아동의 친인척이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담 접수가 되지 않아 무척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할게요. 요약하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지적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줄 친인척이 없고 가해자는 친부인데, 제3자가 대리인으로 상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피해자는 도대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 주셨네요.

안지희 저도 고소 대리를 하다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경찰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형사소송법」에는 고소하려면 성년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등에서 별도 규칙을 만들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변호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제3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니어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피해자도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 시장에서 잘 홍보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성범죄 변호사를 검색해보면 대부분 가해자 변호사가 검색되지만, 실제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적 장애인 대상 사건은 진심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가 많아요. 그런데 피해자 지원 변호사는 워낙 바쁘고, 가해자 변호사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사자가 직접 상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들에게 접근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홈페이지에 변호사 안내 게시판을 만들어서 변호사 정보를 취급 분야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더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더 폭넓은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친족성폭력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사업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 점도 더 많이 홍보되면 좋겠습니다.

행복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많은 단체 중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하는 단체는 아무래도 피해자가 직접 상담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요, 저도 이 점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3자가 신고할 때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같이 요청하세요. 요새는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도 하거든요. 물론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 때문에 집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해자인 부모가 보호자니까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사례도 있거든요. 신고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분리했는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면 좀 더 안전망이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얏 사전 질문 중에도 사건 대응 관련 질문이 꽤 있었어요.

“오랜 기간 친족성폭력을 당했었고, 아무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왔습니다. 증거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고소하려고 하는데, 언제 당했다는 정도만 기억이 나고, 어떻게 당했는지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기억이 나지를 않아 경찰 조사에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2차 가해를 한 다른 친족들이 계속 거주지 등을 알아내는 스토킹을 하는데 대응책을 알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도 혹시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 우선 첫 번째 질문에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정확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해리성 기억 장애나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고하면 경찰은 언제 피해가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기억이 나지 않고 고민이 된다면 먼저 성폭력상담소 등과 상담하면서 언제쯤이었는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성폭력상담소와 상담하면 나중에 상담 사실확인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이를 첨부할 수도 있고요.

안지희 본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서 일반 성범죄처럼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녹음했을 때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도저히 아무런 증거도 없으니까.

제 의뢰인 중 어떤 분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 척하면서 “그때 참 힘들었고 여태까지 많

이 힘들었는데 이제 놔주려고 한다, 나도 너무 힘들어서 사과를 받고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이런 대화를 계속했어요. 단순히 피해자가 “그때 그랬잖아”라고 하면 가해자가 “응” 대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그때는 내가 이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 잘못이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 일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진술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 질문을 했어요.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고소했고, 녹취록이 효과적으로 작용해서 기소도 되고 처벌도 됐습니다. 이 예시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었지만, 한번 생각해볼 만한 방법 같아요.

두 번째 질문에서 가해자나 다른 친족들이 계속 찾아오는 건 가정폭력 범죄로 볼 수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명령이나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도가 「성폭력처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얏 작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도 제정됐잖아요. 이 법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지희 네,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행복 저도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정폭력을 행했던 가해자에게 나의 주소를 알리지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제도 이죠.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경찰 신고 확인증, 상해 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상담사실확인서 등으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쉼터에 잠깐 입소하셨다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찾아오면 안지희 변호사님 말씀처럼 신변보호조치, 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을 경찰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접근금지를 하려면 가해자에게 내 주소와 내 회사의 주소 등을 밝혀야 하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내 주소니까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사실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이미 내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사를 했고, 가해자는 아직 내가 이사한 집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 열람 제한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해자가 동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딸이에요,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도 동주민센터가 “열람 제한 대상자이시네요. 연락할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가해자가 나를 찾아올 수 없게 할 수 있어요.

여러 방법을 잘 고민해서 선택하면 좋겠어요.

앞 채팅으로 한 참여자께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하려 했더니 친족성폭력 가해자인 친부는 가능한데 친부에게 주소를 전달해주는 친모는 열람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 친모도 제한할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안지희 최근에 친모가 방조한 경우에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었거든요. 이런 판례를 근거로 친모도 가정폭력을 방조한 방조범이다, 가정폭력 가해자이므로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해달라고 설명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 가정폭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정서적인 폭력 등 우리가 신고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할 때 아빠분만 아니라 엄마나 다른 가족도 다 가해자라고 이야기하거나 쉼터에 입소할 때 가족 모두가 나에게 폭력을 가했으니 그들의 접근을 전부 막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정신과를 다닌다면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는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해 왔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앞 행사에서 하는 질의응답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오늘은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와 대응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실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친족성폭력 생존자분들의 발언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아름님이 보내주신 발언문을 바람 활동가가 대독하겠습니다.

아름의 발언

안녕하세요. 먼저 발언을 할 몸 상태는 아니라 대독 요청을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저는 38세의 아름이(가명)라고 합니다. 이제 곧 불혹을 맞는 중년에 가까운 사람이죠.

제가 소송을 결심하게 된 건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당장은 죄인들을 고소

할 수 없죠. 그래서 올해 결심한 게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 폐지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뤄내고 싶어졌어요.

저는 조금 잘 사는,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집안의 1남 1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오빠를 엄마가 너무 끼고 살았기에. 저는 여기저기 친척 집이나 할머니네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집과 친척 집에서 수차례 성폭력, 성추행, 폭행 등을 당했으며, 저를 지켜주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라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에 저항하다가 등을 다친 적도 있었습니다. 오빠가 저한테 맞으면 엄마는 어김없이 주먹질과 발길질로 저를 때렸습니다. 상황을 방조했죠.

저는 그래서 집에도 잘 안 가고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며 생활했습니다. 무려 20년을요. 원래도 금전적 지원을 하지 않은 엄마였기에 저는 31살까지 하루 세 시간도 못 잘 정도로 몸을 혹사하며 공부하고 일하며 제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도 친족들 일이나 다른 문제가 얽혀서 가족들을 보고 싶지 않던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저는 도망쳤습니다. 친오빠가 가했던 성폭행 사실을 처음으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난 몰라 이러며 책임을 회피했고. 아빠마저 그러더군요. 너만 없으면 이 집이 평화롭다고. 구타보다 힘든 건 정신적 충격이었고, 저는 작은 쇼핑백에 제 물건 일부만 챙겨 친구의 도움으로 2개월간 요양했던 부모님 집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주변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는 안타깝게도 2019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 못 한 충격으로 생긴 만성 신장염과 일을 하다 생긴 희귀 중증 질환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사지에 점점 통증이 심해져 갈에 찢리는 고통을 약물로 버티며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가해자는 네 명입니다. 오빠, 사촌, 삼촌과 방조하고 폭력에 가담한 엄마.

38년을 살면서 전 자살 시도를 수십 번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늘 머릿속을 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인간만도 못한 사람들 잘 살라고 내가 왜 죽냐?, 안 되면 법을 바꾸고 소송을 하고 죽을 때까지 괴롭혀야지.”

그래서 올해, 제 병이 치료법이 없는 시한부 같은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저와 함께 성폭행을 당했던 사촌과 그 친구를 찾아 설득했습니다. 당시 6살이던 친구와 5살이던 사촌에게 죽기 전에 꼭 법 개정하고 그 사람들을 꼭 처벌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같은 아픔이들이 많을 겁니다. 어쩌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저처럼 PTSD와 공황 등으로 심리 치료를 하거나 남성거부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방치하며 2차 가정폭력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건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만난 여자친구들이나 혹은 남자친구들도 추행이나 성희롱 안 당해본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고소를 하면 경찰과 법원은 마비가 되겠지요. 사회가 급변하는 만큼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따라와야 하는데, 기성세대나 신세대조차 성에 관한 기본적인 관념이 부족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은 매체 속 어른들을 따라 하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교육하길 꺼려합니다.

2020년 경찰 자료를 보면 강간이나 추행들로 신고 접수된 사람 605명 중 23명은 사망, 577명은 상해를 입었고, 신고 접수된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총 23,778건 중 7,046건은 면식범의 소행. 그중 친족 성범죄는 총 690건입니다.

매일 적어도 두 명의 아름이는 성범죄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남녀를 떠나 우리는 모든 세대들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성범죄는 나쁜 것이라고. 나의 몸만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짓값을 받을 거라는 걸 국가가 나서서 필요 없는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캠페인으로 알려야 합니다.

저는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더 나아가서 소년 범죄의 개정과 친족상도례의 폐지를 위한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네 명의 가해자에게 뼈아픈 짓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가 힘을 모아 간절하게 공소시효 폐지의 당위성을 정계에 던져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봅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 채팅으로 마음껏 응원과 연대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당사자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름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대독을 요청한 분들께는 향후 피드백을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기다려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힘내고 건강 잘 챙기세요!” 등 채팅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까 채팅으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구호를 외쳤듯이 이번에는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구호를 외쳐보면 어떨까요? 아름님 발언 대독을 듣고 나니 우리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꼭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차오르네요.

다 같이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앞 생존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 중요하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다음은 푸른 나비님께서 직접 발언해주시겠습니다.

푸른나비 안녕하세요, 푸른나비입니다. 그동안 작은말하기²⁹에서 생존자들을 만나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언어들 이 있었습니다. 그런 언어들 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쓴 발언문 제목은 “가족과 성폭력”입니다.

푸른나비의 발언 <가족과 성폭력>

가족은 천륜이라 합니다.
천륜인 가족에게 성범죄를 겪은 내가 천벌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그들이 천벌을 받아야 하나요?

가족이니까 용서하라 합니다.
가족이기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생의 죄를 지어 그런 일을 겪었다 합니다. (이모가 한 이야기고요.)
또는 부모 잘못 만난 업이라고도 하네요. (친족성폭력 이야기 밑에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가해자의 전생이 뭐길래 아이를 학대하고 성폭력 하나요? (그걸 더 궁금해 해주세요.)
짐승보다 못한 가해자의 전생에 대해 이제는 말해주세요.

성범죄인데 가해자는 자꾸 성행위라 합니다.
70세 먹은 할아버지는 손녀가 동의했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해자들의 말에 제발 공분해 주세요.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근친물’
성범죄이니 소비하는 가해자 모두를 벌주세요.

혹시 꿈을 꾸거나 상상한 것 아닐까? (이것은 청주 여중생 성폭력·사망 사건에서 계부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아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9)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생존자 자조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행사 참여 안내’ 게시판에서 매월 신청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상은 겪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아이 때 겪어서 주변 상황을 더 크게 보인 것 아니냐 합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겪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더욱이 어른이 겪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성폭력은 마찬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생존자들이 다들 힘드냐 합니다.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당연히 힘들지 않을까요?

피해자의 삶, 불행에 대해 그동안 너무 열심히 알려주셨으니 (언론이든 주변이든 너무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해자가 왜 그렇게 계속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는지 생각하고 연구해 주세요. (이제는 가해자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지 그 구조와 가해자의 생각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존자들에게는 외상 후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논문을 봤어요.)

성장하기 위해 이런 범죄를 겪었나요? (성장하려면 이런 범죄를 겪어야 하나요?)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하듯이 외상 이후 피해자를 구제할 촘촘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위로를 받고, 병문안도 받습니다. 그런데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습니다.)

물론 성폭력은 사고가 아닌 성범죄입니다.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극복했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인터뷰에서 때때로 받는 질문이에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평생 동행하듯 일상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견디기만 해도 성장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에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가정의 불행 중 폭력은 다 닮아있다고.)

성폭력은 약자에게 향한 폭력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힘의 균형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도 약자와 강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가족 내에서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약자는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것을 말하려 합니다.

(이번에 청주 여중생 성폭력·사망 사건 법정에 연대하러 갔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습니다.)

성행위로는 죽지 않는데 성폭력으로 죽었습니다.

이제는 성폭력으로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증명할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말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합니다. (저도 제가 살아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생존자라고 말하고 친족성폭력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저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증명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달걀로 바위 치기가 아니냐 합니다.

달걀 썩은 내라도 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누군가 우린 달걀이 아닌 돌멩이라고 합니다

모두 모여 던지면 바위는 깨진다 했습니다. (“언젠가 깨질 수 있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돌멩이가 되어 주세요. (서로를 돌멩이로 키워주세요. 모두 돌멩이가 되어 그 가해를 깨부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폭력에 공소시효는 없어야 합니다. (매마토에 오시는 연대자 분들이 늘 말하는 소망, 소원입니다.)

푸른나비 오늘 온라인 광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에 관해 이야기하고, 영국과 미국 각주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 매마토 정기 시위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얏 푸른나비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울림을 남겼어요. 그만큼 채팅으로도 많은 분이 공감의 목소리를 모아주고 계시네요. “피해자는 다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바위를 깨는 돌멩이!! 멋지십니다”, “짱돌이 모이면 산도 부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여기 짱돌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응원했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저도 짱돌입니다!!!!!!!!!!!!!!”

또다시 구호를 외치고 싶어요. 2019년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구호 중 하나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호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당연히! 꼭 행복할 거예요~

앞 푸른나비님 발언처럼 우리는 굳이 고통으로 성장할 필요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견뎌내면서 성장해가고 있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윤님께서 보내주신 발언문을 파랑 활동가가 대독해주시겠습니다.

하윤의 발언 <부를 수 없는 이름,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

나와 가장 많이 닮은, 세상에 날 태어나게 해주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아 편지를 쓰네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실 언제가 마지막 편지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잘해주신 기억도 있지만 비난과 폭력이 더 강렬했으니까요, 아마도 초등학교 때 반 분위기에 휩쓸려 한두 번은 편지를 써보았겠죠?

간절히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는데 평생 목마른 사랑을 갈구한 것 같아요.

당신도 그만큼 힘든 삶을 살다 가셨겠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는 한참이나 방황하며 살았어요. 죽을 고비에 다다른 뒤에야 아빠가 내게 주었던 고통이 기억났고 나는 평생 그 고통 속에 살았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으며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가슴의 멍으로 남을 거예요.

얼마 전 죽어가던 새끼고양이를 구조했어요.

아빠...!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도 내 딸이라 여기며 지냈는데, 아빠는 내게 대체 왜 그랬나요?

겨우 4주를 나와 함께한 그 아이로부터 원가족에게는 느껴보지 못한 온전한 사랑을 느꼈어요.

하늘나라로 그 아이가 갔을 때 저는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 느낌이었는데...아빠는 내게 왜 그랬나요?

우리 가족들은 나에게 왜 그랬나요?

나만 사라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저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한 까닭에 평생을 참았어요.

나는 사건이 끝난 뒤 20년이 지나서야 기억이 났고, 어릴 적에 제발 기억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외로운 밤이 떠올랐어요. 난 여전히 엄마, 아빠의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서 나의 삶을 살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지만...

아빠가 초라하게 죽어가던 순간을 기억해요

엄마를 때린 아버지를 보며 유치원생이던 나이부터 다짐했어요.

절대 아버를 닮지 않겠다고….

아버의 인생을 되짚어보며 아버와는 다르게, 난 후회 없이 살 거예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찬란하게….

나를 아끼고 세상을 사랑하며….

앞 오늘 이 자리에는 부득이하게 못 오셨지만, 멋진 글을 보내주신 하윤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멋지네요ㅠㅠ….”, “연대합니다”, “연대합니다 하윤님”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채팅은 제가 꼭 하윤님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발언입니다. 달님이 보내주신 발언문을 신아 활동가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의 발언

안녕하세요.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친부로부터 당한 폭력 그리고 그 사실을 밝히고 겪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가 나한테 이상한 일을 한다고 처음으로 느낀 건 네 살 때였습니다. 저의 부친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평소 일상적 대화나 애정 표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단둘만 있을 때 그 사람이 제 몸을 만지고 이상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도 다 떼지 못한 나이였습니다. 그게 성적인 의미인 것은 당연히 몰랐고,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고 무섭고 이상했습니다. 아버가 딸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건 알 수 있었습니다.

부친은 제가 초등학교 몇 년을 친척 집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이 멈췄을 때쯤 저는 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듯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어릴 때 부친이 제게 한 일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걸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일은 마음속에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학교를 마치고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지금 나를 학교에 보내주고 집에서 재워주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겁났습니다. 특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가족들이 제가 그 일을 기억하는 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애써 그 기억을 억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십 대 중반에, 아버지에게 얻어맞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으로 네 시간을 깨지 않고 잠들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침실에서 저지른 성폭력 때문에, 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온 후에도 잠이 들면 꿈속에선 아버지에게 계속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아무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삼십년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잊고 싶어도 꿈에라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그 일을 당할 때 저는 아팠습니다. 주먹으로 얻어맞고 발로 차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오고서야 상담소를 찾았고, 제가 겪은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십 년이 넘는 세월 끝에 부친을 성폭력의 가해자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은 제가 겪은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 경찰관은 제가 그렇게 심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그간 죄를 묻지 않고 가해자의 지원을 받으며 고등학교까지 마칠 수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친부가 친딸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또 누구는 왜 친언니가 아닌 저만 그런 일을 당했을까 물었습니다.

너는 부친을 용서한 게 아니라고,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거에 묶여 현실을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몽땅 저에게 악의가 있어서 한 말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말을 들 때마다 물건처럼 다뤄지던 어린 날처럼 아팠습니다.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한 번이었겠지만 저는 같은 대답을 수없이 되풀이했고 그때마다 똑같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사실 가장 묻고 싶은 건 저였습니다. 어떻게 나를 태어나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왜 내가 하필 그 일을 당했는지, 그 순간에 삼입이 있었는지... 그런데 가해자는 여기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한 번 말하자 경찰은 그 말을 믿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 어릴 때 당한 일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의 후유증으로 심한 병이 생겨서 과일 한 조각도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는 제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어디에서는 제가 가해자를 용서했다고 증명해야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은 딸기도 복숭아도 먹고 발을 뺀고 편히 자면서 누구에게도 추궁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울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또 아팠습니다. 어린 제가 성범죄를 당하는 대신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었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성범죄를 당할 때 제 안에서 무엇이 깨졌는지, 그게 얼마나 아팠고 아픈 채로도 살기 위해 어떻게 애써왔고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제가 말하지 못한 것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 내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물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물건이 아닌 사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도 그런 날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 달님, 발언문으로 달님의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을 물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참여자는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가해자에게 질문 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모두모두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한번 더 구호를 외쳐볼까요? 이번에는 “친족성폭력, 우리가 멈춘다”를 다 같이 채팅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함께 큰 소리로 외칠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다 같이 친족성폭력, 우리가 멈춘다!!!! 친족성폭력! 우리가!! 멈춘다!!!

앞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이야기꾼 세 분께 소감을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오늘 함께해서 정말 감사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생존자분들께서 직접 발언해 주시거나 대독할 수 있는 발언문을 보내주셔서 더욱 뜻깊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연대할 동력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활동하겠습니다.

행복 처음 이야기꾼으로 초대받았을 때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연대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별칭을 “나도 항상 행복하고 다른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행복이라 지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한번 바꿔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희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공감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여성폭력과 관련된 활동들을 해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친족성폭력과 관련된 활동은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하는 인권 활동을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반드시 이뤄야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고, 피해자가 친족성폭력을 신고하면서 바로 집에서 나오게 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단지 제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향후 성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동료 변호사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미경 저는 오늘 이야기, 특히 하반기에 생존자분들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우리만 듣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온 국민이 들어야 하고, 특히 법을 제정하는 의무가 있는 입법부 관계자들이 다 들어야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가슴에는 벅차게 차오르는 어떤 것이 있네요. 법도 마음이 있어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건 역시 우리의, 생존자들의 목소리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운동 역사를 봤을 때, 1990년대에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을 할 때는 많은 형법학자가 “무슨 특별법을 만드냐, 성폭력은 그냥 형법을 적용하면 된다, 형법만 고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쟁취했어요. 2006년에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운동을 할 때도 소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사람들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많은 반대를 했죠. 그렇지만 이런 반대를 뚫고 나가는 힘은 결국 우리 생존자들의 힘 있는 말하기, 그리고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힘이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신 분들과 여러 상담소에 상담해주시는 많은 생존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연대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활동가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얏 오늘 온라인 광장 신청자께서 보내주신 글 중에 제가 마지막에 꼭 같이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글이 있어요. “중3때 겪은 친족성폭행으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그 당시 공소시효 10년으로 형사처벌되지 않았고, 2015년 6월에 서울 대교회에 사실을 알려 기자회견, 가해자 근교에서 종교 성폭력 근절하자는 토론회, 언론 보도, 교회와 기하성에 수차례 알려 사직, 면직 요청했으나 개인 사유 사직서로 2억 3천만 원의 개척지원금을 주어서 성폭행범을 지방에 개척시키기까지 했고 가해자가 지방회에 교단탈퇴서를 제출하여 번복하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뒤엎고, 면직시키기까지 혼자 계란으로 바위 깨기 힘겨웠지만 세계 최초 성폭행 목사면직 시킨 1호가 저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진실과 정의도 승리합니다. 저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동의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하죠. 푸른나비님은 우리가 돌맹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계란으로 바위 깨는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기적이 됩시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을 마칩니다. 마지막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우리가 폐지한다”

다 같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우리가 폐지한다!

부록 ①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카드뉴스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야기이끄미
얌(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외전화 활동가)

▲ 일시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 - 9시 30분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ZOOM (신청자 개별 공지)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일시_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장소_ 온라인 ZOOM (신청자 개별 공지)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이야기이끄미_ 얌(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1부_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이야기꾼_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2부_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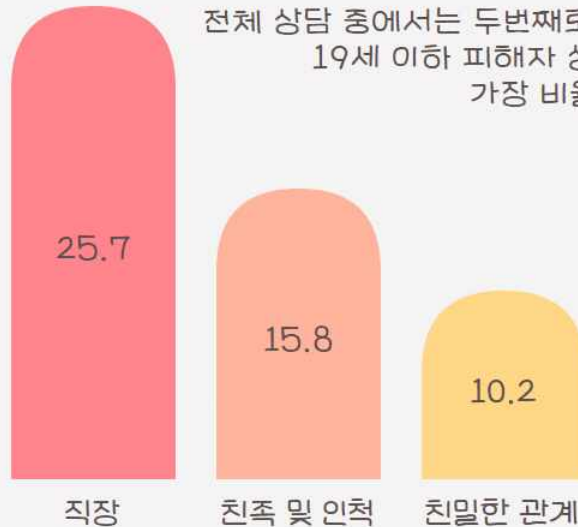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외전화 활동가)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1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은 15.8%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에서는 두번째로 비율이 높고
19세 이하 피해자 상담 중에서는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가장 비율이 높은 1~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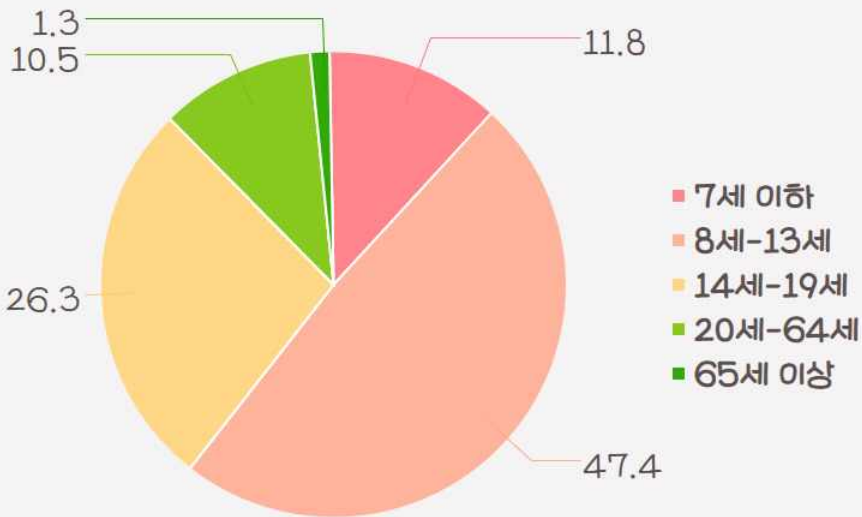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 중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은 15.8%였습니다. 전체 상담 중에서는 두번째로 비율이 높고(직장 25.7%, 친족 및 인척 15.8%, 친밀한 관계 10.2%), 19세 이하 피해자 상담 중에서는 첫번째로 비율이 높습니다.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2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38.1%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인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 연령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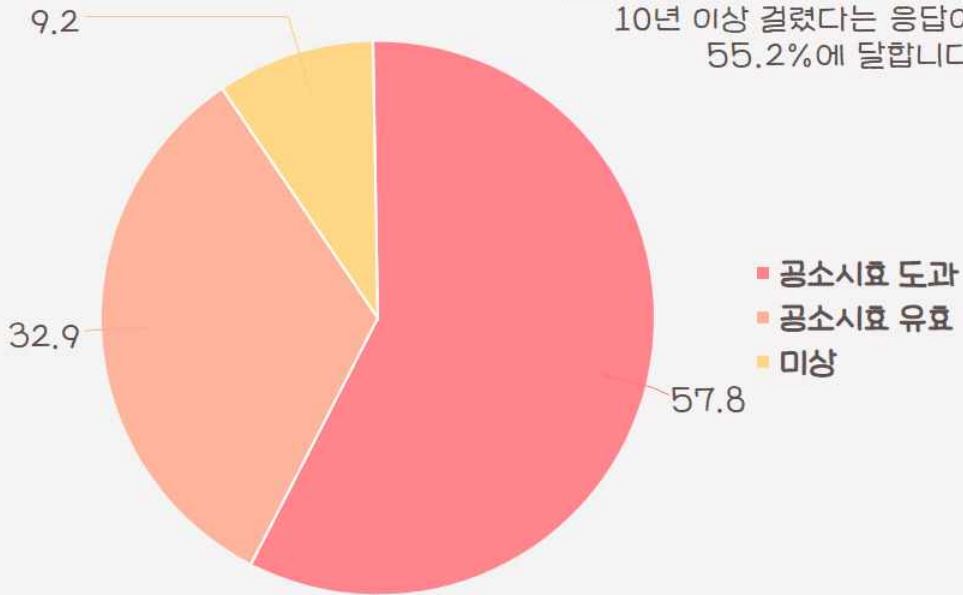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38.1%는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인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3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57.8%는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55.2%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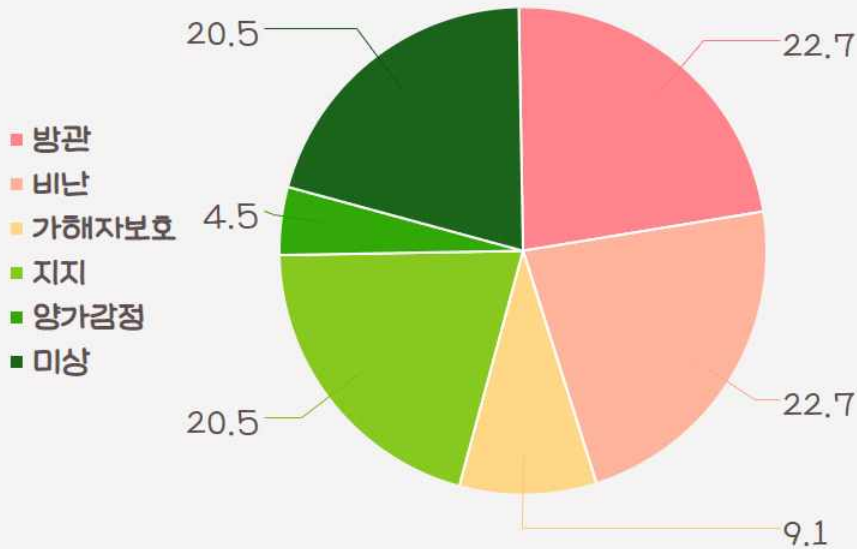
친족성폭력 상담 공소시효 도과·유효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 상담 중 57.8%는 상담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55.2%에 달합니다.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4

친족성폭력 본인 상담 중 54.5%는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방관, 비난, 가해자 보호 등
지지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친족성폭력 본인 상담 중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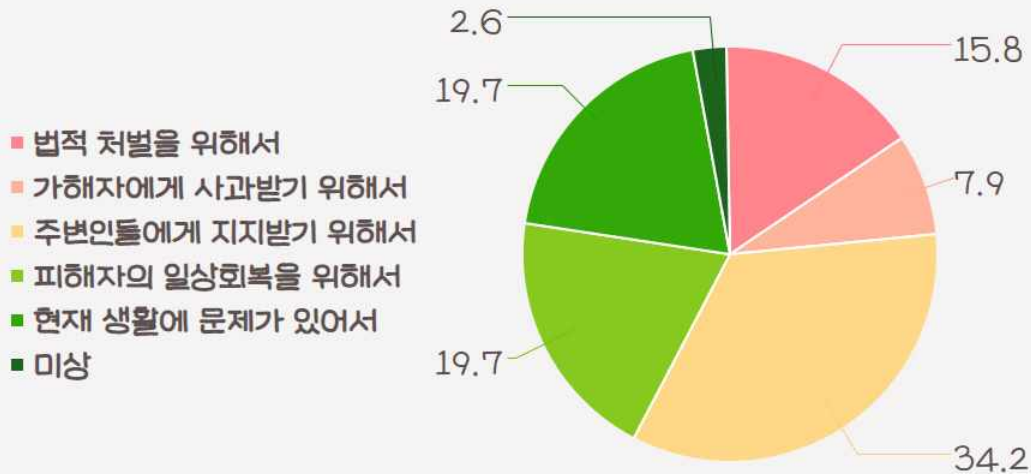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본인 상담 중 54.5%는 주변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방관(22.7%), 비난(22.7%), 가해자 보호(9.1%) 등 지지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5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중 15.8%는 '법적 처벌을 위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공소시효 도과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하더라도 주변인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가 말하기를 시작한 이유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중 15.8%는 '법적 처벌을 위해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친족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공소시효 도과 전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도 어렵고, 시작하더라도 주변인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6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혜영



©서울감서양천여성의전화



©KBS뉴스



한국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가정의 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7

가정의 달, 3명의 이야기꾼과 함께
관련 법과 반성폭력 운동을 알아보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나눕니다!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1부
국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한다

▲2부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정의 달, 3명의 이야기꾼과 함께 관련 법과 반성폭력 운동을 알아보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나눕니다!



알기 쉬운 공소시효 계산하기 ©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친족 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년> 자료집 8-10쪽 설명 참조

01. 공소시효 확인하기

✓ 1. 본인의 생일 확인

본인의 생일을 확인

본인의 출생연도에 13을 더하여 만 13세가 되는 날 확인

본인의 출생연도에 19를 더하여 만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

✓ 2. 피해당시 나이확인

피해일시를 만 13세, 만 19세 기준으로 나누기

✓ 3. 피해당시 시행 중인 형법 확인

피해 당시 적용되는 형법 규정을 확인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형법

✓ 4. 해당범죄의 공소시효 확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은 10년

2007. 12. 21.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7년

01. 공소시효 확인하기

1. 본인의 생일 확인

본인의 생일을 확인

본인의 출생연도에 13을 더하여 만 13세가 되는 날 확인

본인의 출생연도에 19를 더하여 만 19세가 되는 날을 확

인

2. 피해 당시 나이 확인

피해 일시를 만 13세, 만 19세 기준으로 나누기

3. 피해당시 시행 중인 형법 확인

피해 당시 적용되는 형법 규정을 확인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형법

4. 해당범죄의 공소시효 확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은 10년

2007.12.21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7년

01. 공소시효 확인하기

5. 공소시효 중단 확인

2010. 4. 15.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를 당한 날

6. 공소시효 배제 확인(13세 미만)

13세 미만일 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2013. 6. 19.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5. 공소시효 중단 확인

2010.4.15.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피해를 당한 날

6. 공소시효 배제 확인(13세 미만)

13세 미만일 때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2013.6.19. 기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공소시효 적용 배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1. 피해자의 생년월일 확인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3.부터 2006.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5.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1. 피해자의 생년월일 확인

1992.8.10. 출생 > 2005.8.10. 만 13세 > 2011.8.10. 만 19세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2. 피해당시 나이 확인



2005. 3. 부터 2005. 8. 9.까지 피해: 만 12세

2005. 8. 10. 부터 2006. 2.까지는 만 13세

2. 피해당시 나이 확인

2005.3.부터 2005.8.9.까지 피해: 만 12세

2005.8.10.부터 2006.2.까지는 만 13세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3. 피해당시 적용법조 확인



성폭법 7조 2항 (친족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법 제8조의 2(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피해당시 적용법조 확인

성폭법 제7조 2항(친족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법 제8조의2(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4. 공소시효 확인하기

2005. 3. 부터 2005. 8. 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7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됨

2005. 8. 10. 부터 2006. 2.까지의 피해: (공소시효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됨

4. 공소시효 확인하기

2005.3.부터 2005.8.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제7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됨

2005.8.10.부터 2006.2.까지의 피해: 공소시효 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됨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5. 2010. 5. 14. 기준 공소시효 도과여부 확인

2005. 3. 부터 2005. 8. 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2005. 8. 10. 부터 2006. 2.까지의 피해: (공소시효 7년)

2010. 5. 14.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공소시효 기산점이 성년이 되는 2011. 8. 10.이 됨

5. 2010.5.14. 기준 공소시효 도과여부 확인

2005.3.부터 2005.8.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2005.8.10.부터 2006.2.까지의 피해: 공소시효 7년

2010.5.14.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공소시효 기산점이 성년이 되는 2011.8.10.이 됨.

02. 공소시효 계산례



미성년자 친족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는 2005. 3. 부터 2006. 2.까지 미성년자일 때 사촌오빠로부터 여러 번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22. 5. 26. 현재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6. 2013. 6. 19. 기준 공소시효 도과여부 확인

2005. 3. 부터 2005. 8. 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공소시효 기산점이 2011. 8. 10.이 되므로, 2013. 6. 19.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됨

6. 2013.6.19. 기준 공소시효 도과여부 확인

2005.3.부터 2005.8.9.까지 피해: 공소시효 7년

공소시효 기산점이 2011.8.10.이 되므로, 2013.6.19.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됨

03. 공소시효 계산례



2005. 3. 부터 2005. 8. 9.까지 피해
공소시효 배제(고소 가능)

2005. 8. 10. 부터 2006. 2.까지 피해
2018. 공소시효 종료(고소 불가)



결론



- 1)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 2) 친족 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 중단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해야 함

2005.3.부터 2005.8.9.까지 피해는 공소시효 배제(고소 가능)

2005.8.10.부터 2006.2.까지 피해는 2018. 공소시효 종료(고소 불가)

결론

- 1) 13세 미만의 범죄에 대하여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함
- 2) 친족 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 중단으로는 불충분하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규정을 도입해야 함.

부록 ③ 더 알고 싶다면

○ 추천 도서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기록
장화, 불가살이, 김민지, 정인, 희망, 최예원, 엘브로떼, 명아, 푸른나비, 평화, 조제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김지현, 김호진, 이미경, 이소은, 정정희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어느 성폭력 생존자의 빛나는 치유 일기
김영서

『코끼리 가면』 성폭력 쿼어 생존자 이야기
노유다

○ 추천 영상



시간을 거스르다 : 법의 시간 너머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영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이제는 우리가 말한다, 친족 성폭력 : 친족 성폭력 생존자 수기집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야기" 저자와의 낭독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튜브



펴낸곳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펴낸이 : 김혜정

펴낸날 : 2022년 8월 26일

패널 : 앎, 이미경, 안지희, 행복

발언 : 아름, 푸른나비, 하윤, 달

속기·녹취 : 김근현, 김민지

편집·디자인 : 박아름

내지 폰트 : KoPubWorld바탕체, KoPubWorld돋움체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전화 :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팩스 : 02-338-7122

이메일 :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이 '정조에 관한 죄'였던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인식과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성별권력관계와 남성중심적인 사회문화의 문제임을 알리고
평등과 인권을 향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을 통해 수동적인 대상으로 성애화되는
여성, 소수자들의 억압된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정의하는 균열과 변화에 함께 해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분법적 성별권력관계 구조, 여성의 몸과 성을 규범화하는 통념,
차별과 혐오를 확대하는 사회문화에 맞서 평등하게 관계 맺고
나다운 모습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 후원 안내



정기·일시 후원 www.sisters.or.kr/donate/guide
문자후원 #2540-1991(건당 3,000원)